

☐ 문서관리카드(생산용)

● 문서정보

제 목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추진
과제카드명	단위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용 및 관리
	관리
관련정보	
문서요지	불법촬영(일명 몰카) 대책 및 철도안전법 개정('18.6.12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문서요지 붙임	
본 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추진
붙 임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보고경로

구분	직위/성명	의견/지시	처리결과	이력
기안	행정사무관 이형주		2018.11.15 15:38:34	1.0
검토	철도안전정책과 과장 김인		2018.11.15 15:42:23	2.0
결재	철도안전정책관 박영수		2018.11.16 13:05:31	

● 시행정보

발신기관명	국토교통부	발신명의	
생산등록번호	철도안전정책과-5236		
공개여부	비공개(5호)		
비공개 사유	추진중인 사안		
수 신	내부결재		
(경 유)			

● 관리정보

열람범위	부서	열람제한	설정안함
지식공유			

등록번호	철도안전정책과-5236
등록일자	2018. 11. 16
결재일자	2018. 11. 16
공개구분	비공개(5)

행정사무관	철도안전정책과 과장	철도안전정책관
이형주	김인	2018. 11. 16. 박영수
협조자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 일부개정 추진	주요 검토사항	
	정책 중요도	보통
	민원·갈등 가능성	낮음
	기관간 이견가능성	낮음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보통
	서민생활 관련성	보통

불법촬영(일명 몰카)대책 및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신·구조문대비표

2018. 11.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추진배경**

□ 최근 화장실에서 카메라 등을 통한 불법촬영(일명 몰카)이 자행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철도역사 화장실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

※ (장관님 말씀)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음(‘18.6)”

□ 「철도안전법」(‘18.6.12 공포)*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철도안전 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반영 필요

* (법 주요내용) 철도차량 이력관리제, 여객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제지 ■ 녹화 권한 부여 등

□ 주요 개정 내용

① 불법촬영 방지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안 11.8.1]

- 불법촬영장치로 인한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운영자 등에게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점검 하도록 규정
-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화장실·수유실에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 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주체·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②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철도차량 이력관리 시행(철도안전법 제38조의5)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 이력관리 세부절차를 문서화하여 수립·실행하도록 함
- 개정된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제47조)은 운전업무종사자 등(여객역무원·승무원)에게 여객이 열차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지·녹화 권한 부여
- 법 시행(‘18.12.13)에 따라 열차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여객에 대한 조치 절차 등을 철도운영자등이 문서화된 형식으로 정할 필요

□ 향후계획

- 방침 결정 및 기술위원회개최(‘18.11~) / 개정된 기술기준 발령(‘18.12~)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 7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 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 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정의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 철도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1장 총칙

1. 목적

-----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등 -----
-----.

2. 정의

----- 「철도건설법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가.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운
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
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
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
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
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
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
다

나. ~너 (생략)

더.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
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
법」, 「철도안전법」, 「철도
건설법」,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러. ~서. (생략)

<신설>

3. ~5. (생략)

가. -----

-----,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
차, 교육훈련, -----

나. ~너 (현행과 같음)

더.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
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
법」, 「철도안전법」, 「철도
건설법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러. ~서. (현행과 같음)

어. "철도운영안전관리자"란 철도
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
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
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
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
람을 말한다.

3. ~5. (현행과 같음)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 ~10. (생략)

11. 운행안전관리

11.1. ~ 11.7.4 (생략)

11.7.5 철도차량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철도차량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를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7.6 (생략)

11.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11.8.1.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

철도운영자등은 문서화된 철도차량과 역구역내에서의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 계획을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 ~10. (현행과 같음)

11. 운행안전관리

11.1. ~ 11.7.4 (현행과 같음)

11.7.5 철도차량의 운행제한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 제한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철도차량의 운행제한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를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7.6 (현행과 같음)

11.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11.8.1.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

(현행과 같음)

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신 설>

나. ~사. (생 략)

<신 설>

11.9. ~ 11.10. (생 략)

12. 유지관리

12.1. ~ 12.3. (생 략)

12.4 유지관리 이행계획

12.5 유지관리 기록관리

12.5.1~12.5.3 (생 략)

<신 설>

[별표 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 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제2 장 12.3.4 관련)

나. 여객열차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다. ~아. (현행과 같음)

자. 화장실, 수유실 등에 대하여 카메라 또는 녹음·녹화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점검주체·대상·방법 등 포함)

11.9. ~ 11.10. (현행과 같음)

12. 유지관리

12.1. ~ 12.3. (현행과 같음)

12.4 유지관리 시행계획

12.5 유지관리 기록관리

12.5.1~12.5.3 (현행과 같음)

12.5.4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철도운영자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문서화된 이력관리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4] (현행과 같음)

<p>14.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 가. 「<u>철도안전법</u>」 제25조에 따 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p>	<p>14. 노후 철도시설의 평가 가. 「<u>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 관리에 관한 법률</u>」 제19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p>
---	---